

주의회 선거시 후보의 남녀비율 동일추천의무

이지희 | 독일 슈파이어 대학 박사과정, 법학박사 수료

I 들어가며

2019년 1월 31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는 연방 16개¹⁾ 주 중에서 최초로 “주의회 선거시 후보의 남녀비율을 동일”하게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Gleichstellungsgesetz fuer Wahlen)²⁾을 통과시켰다. 브란덴부르크의 다음 의회 선거일은 2019년 9월 1일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과 관련하여 이 개정 법안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2019년 선거 이후인 2020년 6월 30일부터 개정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³⁾

이는 2019년 1월 19일 독일 여성참정권이 100주년⁴⁾을 맞이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맞물려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유럽에 비하면 현재 독일 연방의회 여성비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최근 연방차원에서는 바알리(사민당, Katarina Barley, SPD) 법무장관과 기파이(사민당, Franziska Giffey, SPD) 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오펜만(사민당, Thomas Oppermann, SPD) 연방의원 부의장 등이 여성 의회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⁵⁾에서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의 행보는 앞으로 다른 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구체적 개정 내용,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1 바덴뷔르템베르크주 (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주 (Bayern), 베를린 (Berlin), 브란덴부르크주 (Brandenburg), 브레멘주 (Bremen), 함부르크주 (Hamburg), 헤센주 (Hesse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Mecklenburg-Vorpommern), 니더작센주 (Niedersachs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Nordrhein-Westfalen), 라인란트-팔츠 주 (Rheinland-Pfalz), 자를란트주 (Saarland), 작센주 (Sachsen), 작센안할트주 (Sachsen-Anhalt),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 (Schleswig-Holstein), 튀링겐주 (Thüringen)

2 본 입법내용 소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법안 의결 결정문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3 Landtag Brandenburg –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rucksache 6/10466, 61면

4 1919년 1월 19일 독일 최초로 여성들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의회선거가 치러졌고, 이때 여성유권자 82%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주로 좌파 및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37명(총 423명 중)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5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

II 개정의 배경

브란덴부르크의 여성 선거인 수는 전체 선거인 수의 51.02%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의회 여성의원 수는 단지 38.6%에 머물러, 1990년 이후로 꾸준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 후보자의 수를 적게 지명하는 정당의 지명절차와 정치적 선거문화에 있다. 법적으로는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이하 주 헌법) 제3조⁶⁾에서 규정한 국가시민은 주 헌법 제12조 제3항⁷⁾의 평등조항에 따라 동등하게,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이하 기본법) 제38조 제1항⁸⁾에서 명시한 평등기본권에 의거한 후보자의 기회균등(피선거균등)의 권리가 있음에도 주 선거의 지명절차에 이러한 기회균등의 법적보호가 결여되어 있다. 정당 내에서 여성이 후보자로 지명되지 못한다면, 지명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적 공동체와 정당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여성의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여성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이 정치적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물론 여성의원만이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여야 하는 여성, 미니잡(Mini-Job)⁹⁾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여성 등 현재 독일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예상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다양하고 어려운 사회 정치적 상황들의 실체를 여성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해하여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기본법 제20조 제1항¹⁰⁾과 주 헌법 제3조에 의거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권력에 대한 시민의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선거를 통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사회적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안의 개정은 1994년 기본법 제3조 제2항 제2문¹¹⁾에 명시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실질적인 삶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국가적 과업이 지난 2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입법의무위반을 시정하고, 후보자의 기회균등성과 동등한 민주적 수적할당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제안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손실의 제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형식적인 동등한 법적 지위를 넘어서, 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적음에서 비롯되는 대표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사회 정치적 불리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가 마련됨을 의미한다.¹²⁾

6 브란덴부르크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독일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다(주 헌법 제3조 1항부터 3항 축약).

7 주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보장, 직업, 사회, 교육, 가정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주 헌법 제12조 3항 2문).

8 독일연방의원원은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국민의 대표로서 명령과 지시에 구속받지 않으며, 양심에 구속된다(기본법 제38조 1항 선거원칙).

9 월450유로이하의 급여로 일하거나, 단기간 일하는 직업을 말한다.

10 독일은 민주·사회국가 이다(기본법 제20조 1항).

11 국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기본법 제3조 2항 2문).

12 Landtag Brandenburg – Gesetzentwurf, Drucksache 6/8210

III 개정내용

1. 개요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선거 입후보자 추천에 관한 평등규정으로 주 의회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수를 동일하게 하여 후보자명단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¹³⁾

주 의회의 선거를 위한 각 당의 선거위원회는 우선 남성후보자와 여성후보자의 명단을 분리해서 작성하고, 어떤 성별의 후보자가 상위 후보자 명단에 기록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양 후보자 명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선거후보자 명단이 교대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때,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¹⁴⁾과 이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법(Personenstandsgesetz)의 개정¹⁵⁾에 따라,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성별로 지원하게 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성별 비율이 평등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후보자의 순서가 공평하게 교대로 정해지지 않은 명단은 선거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후보자가 명단에 있는 경우 선거위원회는 그들을 제명하고 그 명단을 다시 성평등 비례대표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데 새롭게 작성된 명단이 부득이하게 수적으로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하게 본다.¹⁶⁾

13 Landtag Brandenburg –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rucksache 6/10466, 61면

14 Bundesverfassungsgericht in seiner Entscheidung, 2017년 10월 10일 (1 BvR 2019/16)

15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18 Teil I Nr. 48, 2018년 12월 21일, 2639면, 2018년 12월 18일 'Gesetz zur Umsetzung d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Rechts auf Eheschließung für Personen gleichen Geschlechts'

16 Landtag Brandenburg –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rucksache 6/10466, 4면

2. 주요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개요에서 이미 설명하였고, 주 선거법 제25조와 제30조의 개정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⁷⁾

<p>주 선거법 2004년 1월 28일, 공포 (GVBl.1104, (Nr. 021, 5.30) 2018년 9월 20, 6조 개정</p>	<p>주 선거법 개정안 (2019년 1월 31일)</p>
<p>25조 후보자의 지명 (3) 명단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후보자는 주의회에서 결정된다.</p> <p>(4) ... (7) ... (8) 대의원의 선출, 구성원 또는 대의원 회의의 소집, 후보자 선출에 관한 절차대리인의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정당과 정치적 연합의 규정이 적용된다.</p>	<p>25조 후보자의 지명 (3) 명단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후보자는 주의회에서 결정된다. 1. 여성과 남성은 명단에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2. 주의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여성이 지명된 명단과 순서, 2. 남성이 지명된 명단과 순서, 3. 두 명단 중에서 후보자의 순서. 4. 성평등한 비례대표 명단은 상위후보 결정과 두 명단 (3항 1호와 2호)순서를 고려하여 교대로 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3항 1호와 2호의 명단의 후보자 수를 다르게 작성하여, 각 명단에서 정한 후보자가 더 이상 없을 때에는 성평등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한 명의 후보자만을 다른 명단에서 지명할 수 있다. 6. 가족관계등록법 제22조 3항과 제45b조 1항에서 정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은 남성도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3항 1호 또는 2호의 명단 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7. 3문에서 6문의 규정은 규약에 의해 단일한 성별만 가입되어 있거나, 단일한 성별만을 대표하는 정당, 정치적 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명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4)...(7) 동일 (8) 대의원의 선출, 구성원 또는 대의원 회의의 소집, 후보자 선출에 관한 절차대리인의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정당과 정치적 연합의 규정이 적용된다. 3항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p>

30조 입후보자 추천의 허가

(1)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 입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명단을 늦어도 선거 44일 전에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경우, 또는
2. 이 법과 이 법을 근거로 공포된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일부 후보자만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의 이름을 삭제한다.

정당과 기관내부 사항의 검증은 제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의 결정은 공개한다.

(2) ... (3)

30조 입후보자 추천의 허가

(1)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 입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명단을 늦어도 선거 44일 전에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경우, 또는
2. 이 법과 이 법을 근거로 공포된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일부 후보자만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의 이름을 삭제한다.
4. 제25조 3항 4문과 5문에 위반되어, 비례대표 명단이 새로이 작성된 경우, 합의된 모든 후보자는 기록되어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작성된 명단의 결과 마지막 자리에 지정된 후보자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유효하다.
5. 정당과 기관내부 사항의 검증은 제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의 결정은 공개한다.

(2) ... (3) 동일

IV 각 정당 입장

현재 브란덴부르크 주 의회의 총 의원수는 88명이고, 이 중 여성 의원수는 35명이다. 동 법안의 표결에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여당(사민당+좌파당)과 녹색당이 찬성하였고, 기민당과 독일대안당은 반대하였다. 구체적인 각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기민당(CDU)

기민당¹⁸⁾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적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6일 바이에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¹⁹⁾을 인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회와 자치단체의 의회구성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남녀 성비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청을 민주주의 원리에서 도출할 수 없고, 의회의 수가 정확히 동일하게 성비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바이에른 주 헌법 제118조 제2항 제2문²⁰⁾은 입법자에게 실질적인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형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권을 인정하면서 성평

18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기독교민주당: CDU)

19 VerfGH München, Entscheidung, 2018년 3월 26일 결정 — Vf. 15-VII-16

20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기존의 불평등함을 제거하여야 한다(바이에른 주 헌법 제118조 2항 2문).

등 의무 규정은 정당의 설립, 활동, 선거 입후보자 추천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며 성평등 규정의 부재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수적 평등 의무규정은 모든 시민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실행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수적 평등 규정은 기회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을 의미한다. 셋째, 바이에른 주 헌법 제118조 제2항 제1문²¹⁾에 반하는 특정한 성의 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어떤 사람을 의회에 파견할 것인지를 결정할 정당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정당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의석의 배분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정당은 남성의 입당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법 제21조 제1항²²⁾의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제2항²³⁾ 민주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입후보의 자유권과 선거의 자유에 반한다. 또한 후보자를 오직 성적 특성과 연결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²⁴⁾에서 금지하는 성적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와 같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 주 정부는 헌법적 합법성을 검증해야만 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형성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재선거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제정은 피해야 하며, 수적 평등규정은 권고 규정으로 하되,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²⁵⁾

2. 독일대안당(AfD)

독일대안당은²⁶⁾ 이번 개정안은 ‘차별금지규정,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기본원칙, 정당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회는 선거권을 가진 시민의 성비를 똑같이 하여 구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입후보하고, 그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선거 입후보자 추천의 권리는 정당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설립과 목적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침해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선거 입후보자의 추천 명단의 평등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만약 이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면, 입법자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라 남성 1/3, 여성 1/3, 제3의 성 1/3의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²⁷⁾

21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바이에른 주 헌법 제118조 2항 1문).

22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다만, 정당의 내부규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여야 하며, 자금의 출처와 사용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기본법 제21조 1항).

23 정당의 목적이나 정당원의 행동이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거나 저해하고, 독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한다(기본법 제21조 2항).

24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 출신, 믿음,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거나 선호되어서는 안 된다(기본법 제3조 제3항 1문).

25 Landtag Brandenburg –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rucksache 6/10466, 66–68면

26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대안당: AfD)

27 Landtag Brandenburg –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rucksache 6/10466, 56면

3. 사민당(SPD)과 좌파당(Linke)

사민당²⁸⁾과 좌파당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법 제21조의 정당 자유와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문²⁹⁾과 주 헌법 제22조 제3항 제1문³⁰⁾에서 규정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근거가 필요한데,³¹⁾ 기본법 제3조 제2항 제2문의 ‘국가는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차별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주 헌법 제12조 제3항 제2문의 ‘주는 직장, 공공 생활, 교육 및 직업훈련, 가정생활 및 사회 보장적 영역에서 성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는 주 의회가 불균형적인 성별의 대표성을 시정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본 개정안은 선거권의 침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입후보자 추천과 관련되어 있어 특정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후보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것이다. 나아가 선거권의 기본 원칙과 정당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허용 가능한 침해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주 헌법 제12조 제3항 제2문이 주 선거준비위원회에 적용되는 한,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구속력으로 볼 수 없다.³²⁾

V 시사점

우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을 보면 2005년 8월 4일의 개정을 통하여 이미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하여 여성후보의 50%이상 추천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의 경우엔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 일종의 권고 사항일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 공천 비율에 대한 조항은 아예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월 27일 이른바 ‘남녀동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된 남녀동수법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이 적용되는 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정당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불이익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지역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정당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프랑스의 ‘파리티테(parité·동일)법’를 참조했다고 한다.³³⁾

28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독일사회민주당: SPD)

29 국민은 주, 지역구(Kreisen), 공동체(Gemeinden)에서 일반, 직접, 자유,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있어야 한다(기본법 제28조 1항 2문).

30 선거와 국민투표는 일반, 직접, 평등, 자유와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제22조 3항 1문).

31 Bundesverfassungsgericht, Urteil vom 26.Februar 2014-2 BvE 2/13. Rn. 53

32 Landtag Brandenburg –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rucksache 6/10466, 60면

33 <http://new.joins.com> “박영선 의원 여성공천 50%”

우리의 공직선거법이나 박영선 의원의 입법발의는 독일보다 우리가 입법적으로 한발 앞서 있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시민당과 좌파, 녹색당이 제안한 법안 초안에는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도 양적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개정안에서 그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는 기본법과 주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형성의무와 선거의 기본원칙의 침해가능성을 조율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우리가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동 법안을 찬성한 정당과 반대한 정당의 법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입법적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경우 입법적 타당성에 힘이 실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회적 상황에서 본다면, 동 개정 법안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제3의 성을 인정한 독일답게 국민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제3의 성을 인정하여 피선거권의 경우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에만 국한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앞으로 제3의 성을 가진 국민의 권리보호와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사항이라 생각한다.

브란덴부르크 주법의 개정이 얼마나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연방법의 개정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출처 및 참고사이트

1.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6/drs/ab_8200/8210.pdf
(Landtag Brandenburg - Gesetzentwurf, Drucksache 6/8210)
2.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6/drs/ab_10400/10466.pdf
(Landtag Brandenburg -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rucksache 6/104661)
3. Zeit online: <http://www.zeit.de/politik/deutschland>
4. <http://www.abendblatt.de/politik/deutschland/article216339969/Brandenburg-beschliesst-Gleichstellungsgesetz-fuer-Wahlen.html>
5. <https://www.stimme.de/deutschland-welt/politik/dw/Brandenburg-beschliesst-Gleichstellungsgesetz-fuer-Wahlen;art295,4148656>
6. <https://www.bundestag.de/grundgesetz> (독일 기본법)
7. <https://bravors.brandenburg.de/de/gesetze-212792>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8. https://www.bayern.landtag.de/fileadmin/Internet_Dokumente/Sonstiges_P/BV_GG_web.pdf (바이에른 주 헌법)
9. <https://www.bundestag.de/presse/hib/572524-572524>
10. <https://dejure.org/gesetze/PStG>
11. <http://www.law.go.kr>
12. <http://new.joins.com> 박영선 의원 여성공천 50%